

# 2007 양돈관련 농림사업시행지침

다음은 농림부가 발표한 2007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양돈관련 사업 지원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.

## 농축산물자조금 조성지원 중 축산물 자조금 조성

- ▣ 사업량, 총 사업비 : 7개축종, 27,000백만원(양돈 2007년 사업비 5,000백만원)

## 가축분뇨처리 지원(자율)

- ▣ 총 사업비 : 424억원(정부안 364억원+공동자원화시설 60억원 추가)

### ▣ 사업대상자

#### (1) 사업대상자

##### (가) 단독시설

- 오분법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
- 오분법상 신고 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(액비저장조 및 퇴비사)

##### (나) 공동시설

- 축산단지, 축산계열사업주체(소·돼지·닭)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
- \* 공동퇴비장 : 가축 분뇨만을 이용해 퇴비화하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, 퇴비 생산 업체(영농조합법인)

- 가축을 밀집사육하고 있거나 중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공동자원화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

##### (다) 정착촌구조개선

-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(영농조합법인 등), 축산농

가, 한빛복지협회, 지자체 - 단독·공동시설에 준하여 한도액 지원

##### (라) 액비저장조설치

-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한 액비살포 능력이 있거나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에 위임하는 축산농가, 경종농가
- 시장·군수가 구성·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 등 전문유통주체
- ※액비화 시설 설치 자금 지원시 악취제거,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을 유도하고 우선지원

##### (마) 액비유통센터

- 액비 살포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하거나 계획이 수립된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, 양돈협회 시·군지부, 영농조합법인, 농·축협작목반, 민간전문유통주체

##### (바) 액비살포비 지원

- 시장·군수가 구성·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한 전문유통주체(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ha당 150천원 지원)

### ▣ 지원규모 및 조건

- (1) 돈사 사업비단가 : 74천원/㎡ (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, 관리사·창고면적 제외)

- (2) 2007년 사업비계획(농특회계 보조, 지방비, 자

부담 등 포함)

- 단독·공동시설 : 사업량 829천㎡, 사업비 34,835백만원(보조 30%, 지방비 20%, 융자 50%)
  - 단독시설 : 300백만원/개소
  - 공동시설 : 1,500백만원/개소(공동퇴비장은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/개소, 공동자원화시설은 1일 1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)
- 정착구조개선 : 사업량 48천㎡, 사업비 2,419백만원(보조 70%, 지방비 30%, 개소당 사업비는 단독·공동시설에 준함)
- 액비저장조 : 사업량 650개소, 사업비 11,050백만원(개소당 17백만원, 200톤 규모기준, 폭기·교반시설포함, 보조 30%, 지방비 50%, 자부담 20%)
- 액비유통센터 : 사업량 10개소, 사업비 2,000백만원(개소당 200백만원(최초지원시), 보조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)
- 액비살포비 지원 : 사업량 40천ha, 사업비 6,000백만원(150천원/ha, 보조 50%, 지방비 50%)

(3) 부대기계·장비의 개소당 한도액

- 가축분뇨 퇴·액비처리장비 : 10백만원 이내(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)
- 정화방류수탈색장치 : 30백만원이내
- 가축분뇨운반·살포용차량, 축분퇴비포장기 및 왕겨팽연화장비(공동시설용에 한함) : 30백만원 이내
- 폐사축 등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 : 처리용량에 적합한 실비적용(시·도지사 결정)

**가축개량사업(공공)**

(1) 돼지개량

- 사업량, 총 사업비 : 2종, 1,699백만원(축발기금 보조 869.5백만원, 융자 300백만원, 자담 529.5

백만원)

■ 사업내용

- 시·도에 종돈업등록을 필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 실시
- 종돈업등록을 필한 농장에서 공인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경우 자가검정 실시
- 종돈검정소 신축을 통해 검정·방역시설을 첨단 현대화하여 종돈검정의 효율성 향상 및 방역 강화

■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

- 농장검정(입회) : 대한양돈협회, 한국중축개량협회 / 검정완료돈 두당 3,200원
- 농장검정(자가) : 공인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종돈업 등록업체 / 검정완료돈 두당 2,300원
  - 검정 대상돈은 혈통등록된 부모로부터 생산된 순종 자돈
  - 검정돈 개체의 산육검정 및 어미의 산자기록을 한국중축개량협회에 D/B화
- 종돈검정소 시설 : 대한양돈협회 / 시설비

(2) 종축등록 및 신기술 보급

- 사업량, 총 사업비 : 3종, 1,672백만원

■ 사업내용

- 종축등록 등 : 종축등록 희망농가에 대해 종축등록, 심사 및 가축품평회 추진
- 축산박람회 : 행사 주관단체(협회)에서 국제축산박람회 추진

**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(자율)**

- 사업량, 총 사업비 : 10개소, 20,000백만원(국고 융자 16,000, 자부담 4,000백만원)
- 지원조건 : 연리 2%, 3년거치 일시상환
- 지원대상
  - 자연순환농업협약식을 체결한 농·축협, 영농조합법인 등
  - 가축분뇨 퇴·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

농·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

▣ 자금용도 : 운전자금

- 퇴·액비를 이용한 농산물을 출하선급금, 퇴·액비 제조에 필요한 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, 퇴비판매에 따른 외상미수금, 퇴·액비 이용확대 도모를 위하여 임차한 농지 임대료, 퇴·액비 생산·유통관련 제비용 및 교육·홍보비,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의 개·보수자금

**축산물 유통개선사업(공공)**

(1) 도축·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

■ 사업량, 총 사업비 : 170개소, 160,928백만원

■ 사업내용

(가)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

- 지원조건 : 연리 3~4%,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(용자 70%, 자담 30%), 사업기간 2~3년, 지원액은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·반영

(나) 도축장 시설보완

- 지원조건 : 연리 3~4%,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(용자 70%, 자담 30%), 지원금리 생산자 3%, 일반업체 4%, 사업기간 1~3년, 지원액은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·반영

(다) 축산물가공업체 시설

- 지원조건 : 연리 3~4%,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(용자 70%, 자담 30%), 사업기간 1~3년,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조정·반영

(라) 도축장 운영자금

- 지원조건 :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등급에는 0% 금리, 중위등급에는 3% 금리지원, 1년거치 일시상환(공통)

(마)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

- 지원조건 : 연리 3~4%, 1년거치 일시상환, 지원금리 생산자 3%, 일반업체 4%

(2) 축산물등급판정

■ 총 사업비 : 14,184백만원

**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(공공)**

(1) 산지축산물생산·유통지원사업

■ 총 사업비 : 174,000백만원

■ 브랜드사업 : 사업대상 경영체의 규모화, 내실화,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·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

- 지원규모 : 축산발전기금 1,097억원(사업자금 897억원, 인센티브자금 200억원)
- 지원조건 : 연리 3%, 3년거치 일시상환(인센티브자금 : 무이자, 1년)
- 지원대상 : 2004년~2006년 브랜드사업 지원경영체(2006년말 기준 73개소)

■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 : 브랜드사업과의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와 중장기조합경제사업 발전전략에 의한 비전과 목표가 분명한 경우에 지원

- 지원규모 : 축산발전기금 350억원, 지원조건은 연리 3%, 3년거치 일시상환, 지원대상은 축협조합

(2) 가축계열화사업

■ 사업량, 총 사업비 : 돼지 4개소, 18,000백만원

■ 지원대상자 및 대상종족 : 가축계열화 사업자, 돼지, 닭, 오리

■ 지원대상 및 내용

- 계열주체사육시설 : 사업비의 70% 이내, 연리 4%(농·축협 등 생산자단체 3%), 3년거치 7년균분상환
- 계열농가생산시설 : 사업비의 70% 이내, 연 3%
- 가공시설 : 사업비의 70% 이내, 연리 4%(농·축협 등 생산자단체 3%), 3년거치 7년균분상환
- 유통시설 : 가공시설과 같은
- 계열화사육비 : 총사업비의 50% 이내, 연리 4%(농·축협 등 생산자단체 3%), 2년이내 상환

(3)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

■ 총 사업비 : 183백만원

■ 사업기간 : 1월~12월, 지원 보조 100%

(4)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사업

- 사업량, 총 사업비 : 10개소, 1,000백만원
- 지원대상 및 조건 : 브랜드사업 선정 경영체(브랜드경진대회 수상경영체 및 우수브랜드인증 경영체 우선지원), 사업단가 1억원 이내(기금보조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 30%)

**축산물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(공공)**

(1) 가축질병근절대책

- 총 사업비 : 32,627백만원
- 사업내용
  - (가)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지원사업
    - 사업내용 : 방역본부 운영비·인건비·자산취득비 등 지원
    - 지원조건 : 운영비·인건비 및 기자재 100% 보조(단, 출장소 방역요원,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는 지방비에서 40% 부담)
  - (나)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사업
    - 사업내용 : 매주 수요일을 '전국일제소독의 날'로 지정, 양축농가의 자율적인 일제소독 지도
    - 소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소규모 농가는 소독약품 공급(30회) 및 공동방제단(4,017개단) 운영(운영비 지원 연 18회)으로 소독 지원
    - 지원대상 : 농협(소독약품) 및 마을단위 공동방제단(운영비)
    - 지원조건 : 소독약품(국비 100%), 공동방제단 운영비(국비 50, 지방비 50)
  - (다) 전염병 발생신고·방역관리 위반농가 신고포상금 지급사업
    - 구제역·조류인플루엔자·광우병 등 발생신고자, 예방접종·이동제한 등 방역규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(건당 20~100만원, 국비 100%)
  - (라) 가축방역 우수지자체 포상사업(국비 100%)
    - 가축방역사업 : 총 39개소(도 3, 시·군 30) 평가 및 포상

(2) 축산물검사

- 사업량 : 161점, 6,199백만원
- 사업내용 : 축산물검사장비 지원(37종 161점), 검사장비 유지·보수비(335,160천원), 축산물 유상수거비 지원(195,000천원), 검사재료비 지원(939,000천원,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등)

(3) HACCP 컨설팅지원

- 사업량, 총 사업비 : 60개소, 600백만원
- 사업기간 1년, 지원대상은 돼지·소 사육농가와 식육판매업소 중 HACCP 적용희망 농가, 개소당 10백만원 지원(기금보조 50%, 자부담 50%)

(4) 가축방역

- 총 사업비 : 109,370백만원
- 사업내용 : 긴급방역재료비, 예방약품 등 공급, 구제역·돼지열병, 오제스키병 등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등, 사업대상은 시·도(군), 가축위생시험소(44개소)
- 지원기준 : 국고 70%, 지방비 30% 수준(세부사업별로 지원기준 상이)
  - 예방주사,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약품비 : 국비 70%, 지방비 30%
  - 살처분보상금, 혈청검사사업 등 : 국비 100%
  -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및 장비지원 : 국비 50%, 지방비 50%
  - 예방접종 기술·검진 채혈비 : 국비 50~60%, 지방비 40~50%
  - 랜더링처리시설 보강 : 국비 50%, 지방비 30%, 자담 20%

(5) 가축공제

- 사업량, 총 사업비(예산안) : 53,346.1천두, 48,764백만원(돼지 5,469천두, 12,230백만원)
- 사업내용
  - 공제가입금액 : 가입자 자율결정
  - 공제가입기간 : 1년단위(월 단위도 가능)
  - 공제요율 : 추후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
  - 납입공제료 : 축발기금보조 50%, 가입자부담 50%

- 돼지 : 가입대상 제한없음, 포괄가입형태, 지원 비율은 납입공제료의 50%
- 축사 : 가입대상은 가축사육건물 및 부속건물, 포괄가입형태, 지원비율은 납입공제료의 30%

■ **보장범위 및 보장내용(돼지)**

- 질병(TGE, PED, Rota)에 의한 손해 :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(자기부담금 : 가입금액 20% 또는 250만원중 적은 금액)
- 설해, 화재, 풍재, 수재에 의한 손해 : 가입금액 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95%까지 보상
- 축산휴지손해 : 가입금액 한도내 시가 100% 보상
-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: 가입금액 한도내 시가 95%까지 보상
- 축사(화재, 풍재, 수재에 의한 손해) :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

**친환경농업육성(자율)**

- 사업량, 총 사업비(예산안) : 40개소, 20,000백만원
-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의 보급·확산으로 농업환경오염원 경감

**농업종합자금지원(자율)**

- 총 사업비 : 1,020,000백만원
- 지원대상자 :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·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(신규포함), 객토희망농가,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, 기타 농촌가공사업자,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,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한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
- 축산분야 지원대상사업 : 한육우·낙농·양돈·양계·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, 유기축산업 등

의 기반조성, 사육시설(축사, 창고 등) 및 장비 등 (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지원제외, 단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)

**후계농업경영인 육성(자율)**

(1) 후계농업경영인 육성

- 사업량, 총 사업비 : 1,400명, 83,000백만원(창업농지원 1,000명, 63,000백만원 / 신규후계농업인지원 400명, 20,000백만원)

(2) 농업인턴제

- 사업량, 총 사업비 : 100명, 600백만원
- 지원내용 :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지원

(3) 창업농후견인제

- 사업량, 총 사업비 : 100명, 500백만원
- 지원내용 :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50만원 한도로 자금지원(국고보조 70%, 지방비보조 30%)

(4)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

- 사업량, 총 사업비 : 1,500명, 120,000백만원
- 농가경영안정지원(자율) 중 농·축산경영자금 지원
- 총 지원규모(안) : 32,000억원
- 일반축산경영자금

- 지원대상 :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·전업 축산농가
- 자금용도 : 사료구입비, 동물약품비 등 축산경영비
- 지원대상 축산규모(돼지) : 500두 미만
- 지원금액 :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 이내(대출잔액 기준)
- 지원조건 : 1년이내(필요한 경우 1년 범위내 연장가능), 연리 3.0%

\* 참조 : 농림부 홈페이지 [www.maf.go.kr](http://www.maf.go.kr)